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34
----------	-----

2023년 3월 10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월 25일, 최유희 의원 외 37명

2.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10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유희 의원)

1. 제안이유

○ 동 조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교육·학예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 이로 인해 동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단 한 차례도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북한 지역의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학생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역시 운영 성과나 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통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 적립에 따른 재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폐지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폐지조례안은 2023년 1월 25일 최유희 의원 외 37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434호로 발의되어 2023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폐지조례안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동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조차 대부분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sup>1)</sup>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교육·학예 분야에서의 남북교육교류협력 추진 필요성이 확대되었는 바,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4239호, 1990.8.1., 제정

○ 서울시에서도 지난 2019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북한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협력과 학생 상호 간 교류협력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sup>2)</sup>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에 따라 남북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10억원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왔습니다.

○ 그러나 지난 3년간(2020~2022)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교착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매년 조성된 기금의 대부분이 운용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채 재예치되는 사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당초에는 조성 기금 10억원 중 6억 4천 6백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3억 5천 4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당해연도 중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조성 기금 전부를 예치하였으며,<sup>3)</sup>

2021년에도 당초 ‘북한체험학습 추진’ 및 ‘남북교육교류사업’, ‘남북교육교류 환경조성’ 사업을 위해 4억 5천만원의 지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당해연도 중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6천 8백만원만 지출되었습니다.<sup>4)</sup>

2)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교류협력
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3.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협력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협력사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
5.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3)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032), 2020.10.16.

○ 또한 2022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지출 계획한 9억 3천 4백만원 중 대부분을 지출하지 못하고, 지출액을 1억 5천 8백만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sup>5)</sup>

○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와 기금사업의 반복적 변경 및 중단 등 남북교육교류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 심의 시 동 계획안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sup>6)</sup>

동 폐지조례안은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안의 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남북관계의 경색과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실효성 상실 및 지속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한 행정력 낭비를 고려할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업현황(2020-2023년)**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결과
2020	북한체험학습	- 북한 지역(금강산, 개성공단, 평양 등 가능지역 선정)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교원 사전 답사단 파견 - 학생 대상 북한지역 현장체험학습 추진	미추진
	남북교육교류협력	- 남북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학술회의 - 서울-평양 교육기관 상호탐방 및 생태·환경 공동체험 - 남북 학생 간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교류 - 북한 학교, 학생 등 대상 교육 분야 인도적 지원 등	미추진
2021	북한체험학습	- 북한 지역(금강산, 개성공단, 평양 등 가능지역 선정)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교원 사전 답사단 파견 - 학생 대상 북한지역 현장체험학습 추진	미추진
	남북교육교류협력	- 남북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학술회의 - 서울-평양 교육기관 상호탐방 및 생태·환경 공동체험 - 남북 학생 간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교류	미추진

4) 당초 계획변경을 통해 8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전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1천 2백만원은 결산상 불용처리되어 다음연도 예치금으로 적립되었음.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p.117.

5)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의안번호 367), 2022.10.17.

6)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결과, 2022.12.16.

		- 북한 학교, 학생 등 대상 교육 분야 인도적 지원 등	
	환경조성	- 청소년 리더양성 프로그램(우리는 평화지킴이) - 통일교육 핵심리더 역량강화 - 통일교육 주간 활성화(교실로 온 평화통일)	추진
2022	역사 탐방	- 남북 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역사 탐방	미추진
	남북교육 교류협력	- 남북학생간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 학생·교사 북한 교육기관 방문, 자매결연 교육교류 등	미추진
	북한교육 지원협력	- 교육교류를 통한 교구·교재 지원 등 각종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 - 북한 각급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교육지원협력 사업 추진	미추진
	환경조성	- 청소년 리더양성 프로그램(우리는 평화지킴이) - 통일교육 핵심리더 역량강화 - 통일교육 주간 활성화(교실로 온 평화통일)	추진

[표-2]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022-2022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당초계획(A)	변경(B)	증감(B-A)
2020	계	1,000,000	1,000,000	-
	교수-학습활동지원	1,000,000	-	△1,000,000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353,600	-	△353,600
	예치금	646,400	-	△646,400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	-	1,000,000	1,000,000
2021	계	2,000,000	2,002,317	2,317
	비용자성사업비 (교수-학습활동지원)	450,000	80,000	△370,000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	1,550,000	1,922,317	372,317
2022	계	2,933,787	2,955,792	22,005
	비용자성사업비(교수-학습활동지원)	933,600	157,600	△776,000
	기본경비	2,400	2,400	-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	1,997,787	2,795,792	798,005

[표-3]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2023년)

(단위: 천원)

기금명	'22년도 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 말 조성액(e) (d-a+b-c)	'23년도 본예산 심의 결과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계	2,795,792	1,032,570	830,000	2,998,36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775,470	1,000,000	830,000	2,945,470	전액삭감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20,322	32,570	-	52,892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의 폐지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남북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조례의 폐지보다는 기금 적립으로 인한 재정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기금의 전출금액을 조정하거나 추가 전출금 없이 기존적립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 조례 폐지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20, 2023.2.13.).

○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sup>7)</sup>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액은 2017년 1,907백만원(32.8%), 2018년 3,721백만원(50.8%), 2019년 7,255백만원(48.4%), 2020년 7,043백만원(46.9%), 2021년 4,305백만원(33.2%)으로 저조하여 동 기금의 존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sup>8)</sup>

이와 비교하여 기금 조성 이후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집행액은, 2020년 1,000백만원 전액 예치금 예치(0%), 2021년 68백만원(3.4%), 2022년 138백만원(4.7%)으로 전체 예산대비 5% 미만인 상태로 지속되며 사업 유지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7)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자원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p.216~224.

참고로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는 대북사업 축소로 인한 관련 위원회 미설치, 예산 미집행 등을 이유로 2022년 12월에 폐지되었습니다.<sup>9)</sup>

- 따라서 동 폐지조례안은 현재의 남북관계 하에서 현실적으로 남북교육 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과 지난 몇 년간 기금 사업 계획이 변경·중단되면서 반복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폐지조례안」 심의결과, 2022.12.2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